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1. 3 선고 2021가단2260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피고D

변론 종결2022. 9. 29.

판결 선고2022. 11. 3.

주 문

1. 피고와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8.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224,54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224,5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9.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2,297,55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2,297,5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E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의 상속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8. 6.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방법에 관하여 본다.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22.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1,82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조합'인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2,297,5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의 상속분인 2/11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79,935,000원²⁾ 이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1,820만 원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의 가액은 14,533,636원($79,935,000\text{원} \times 2/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위 피담보채권액 중 위 2/11 지분의 부담액은 3,309,090원($1,820\text{만 원} \times 2/11$)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11 지분의 가액에서 위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으로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가액은 11,224,546원($14,533,636\text{원} - 3,309,090\text{원}$)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위 공동담보로 제공된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11,224,546원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라. 따라서 피고와 E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이는 11,224,5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1,224,5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염경호

별지

1)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8. 9. 4.은 피상속인 F이 사망한 날이고, 피고와 E 등이 F의 사망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날은 2019. 8. 6.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79,935,000원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7,370만 원을 합한 153,635,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은 건물뿐만 아니라 그 부지까지 포함한 가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개별주택가격 7,37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가액인 개별공시지가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의 가액인 7,370만 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더 높은 금액인 개별공시지가 79,935,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의 주장처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합한 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